
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
'23년도 우수보강사업자 선정기준

2023. 9.

한국토지주택공사
건축물관리지원센터

1 목적

현재 운영중인 보강사업자 Pool에서 실적 및 공사관리가 우수한 보강사업자를 선정하여, 보강사업자에게는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사업 대상자에게는 객관적인 보강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함으로써,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2 우수 보강사업자 선정기준

□ 개요

- (평가대상) 평가기간 내 ‘보강공사 결과보고 승인’까지 완료된 사업이 1건 이상인 등록사업자
- (평가기간) 전년도 평가 이후인 '22년 6월부터 '23년 11월말까지
- (평가기준) 대상자 및 지자체 평가 등 평가기초 자료작성 후 세부평가 기준의 5개 항목, 5개 등급으로 평가
- (평가위원) 국토부 및 LH 담당자 5인 이내 심의위원회 구성

□ 세부평가기준

- (항목별/등급별 기준점수)

평가항목	배점	등급별 기준점수				
		최우수 (배점x1.0)	우수 (배점x0.9)	보통 (배점x0.8)	미흡 (배점x0.7)	부적합 (0점)
견적요청 응답률	40점	90%이상	70~89%	50~69%	30~49%	50% 미만
사업 실적수	30점	6건 이상	4건 이상	3건	1건 이상	0건
이용자 만족도	15점	90~100점	80~89점	70~79점	60~69점	60점미만
지자체 평가	15점	90~100점	80~89점	70~79점	60~69점	60점미만
홍보자료 등록	가산5점	등록	-	-	-	미등록

○ (평가항목 설명)

1. 견적요청 응답률 : 대상자의 견적요청 건수 대비 견적서 제출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비율별 배점 (40점 만점)
2. 사업실적 : 평가기간 내 '보강공사 결과보고 승인'까지 완료 된 공사 건수 기준 (30점 만점)
3. 이용자 만족도 : 사업대상자가 2회('보강계획서 작성 완료' 및 '공사완료' 후) 평가 하되, 평가가 없는 경우 '보통'등급 부여 (15점 만점)
4. 지자체 평가 :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되,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제외 가능 (15점 만점)
5. 홍보자료 등록 : 시스템에 홍보자료를 등록한 사업자에게 가산 (5점)

3 보강사업자 참고사항

□ 우수보강사업자 인센티브

- (표창수여)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모든 보강사업자에게 'LH건축물관리 지원센터장' 표창 수여
- (우수보강사업자 마크 🏆 부여) 다음 우수사업자 선정시(24년 11월 예상) 까지 홈페이지 사업자현황 메뉴에 우수사업자 마크 표시
- (선정결과 홍보) 선정결과를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

□ 보강사업자 주의사항

- (우수보강사업자 관리) 우수보강사업자가 중대민원을 발생시키거나, 하자조치 등 사업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우수사업자 목록에서 제외 가능
- (부진업체) 등록보강사업자 중 견적 응답률이 30%이하인 사업자 중, 참여 의사가 없음이 확인 될 경우 POOL에서 삭제될 수 있음

4

주요추진일정

- 6월 우수사업자 선정관련 주요내용 홈페이지 사전안내
- 9월 선정기준 확정 및 홈페이지 게시
- 11월 고객만족도 조사 및 지자체평가 완료
- 12월초 평가기초자료 작성
- 12월중 평가위원 구성 및 심의위원회 개최
- 12월말 우수사업자 시상 및 홈페이지 게시